

지방세법

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.

문 1. 「지방세기본법」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납세고지서, 납부통지서,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때로서 해당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. 다만, 납기 전 징수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- ②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- ③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것을 그 송달받을 자가 확인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.
- ④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.

정답 : ③

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.

문 2. 「지방세기본법」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행한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.
- ②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

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- ④ 기한이 연장된 후 한 차례 더 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 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,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 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.

정답 : ③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문 3. 「지방세법」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.
- ②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「부가가치세법」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1로 하며,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소비세는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관리자에게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소비세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, 이 경우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.

정답 : ②

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·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소비세와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·납부·경정 및 환급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소비세 신고를 한다는 말은 옳지 않다.

문 4. 「지방세법」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승마회원권,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.
- ②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말하므로 차량, 기계장비,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원시취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.
- ③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(상속이나 실종에 의한 경우는 별도 규정 적용)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율을 「지방세법」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
정답 : ②

차량, 기계장비,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.

문 5.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해당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지 아니하며 「지방세법」 제13조 제5항에 규정된 중과대상 재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)

- ①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
- ②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
- ③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년 미만의 것
- ④ 비상재해구조용, 무료도선용, 선교(船橋)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(傳馬用)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

정답 : ③

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한다.

문 6. 「지방세법」상 취득세 부과와 관련한 취득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연부로 취득하는 것(취득가액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)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. 단,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.
- ③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.
- ④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·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다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.

정답 : ④

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·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

특일로 본다. 다만,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·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는 사용승낙일·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.

문 7. 「지방세법」상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하며,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주민 세의 비과세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.
- ②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(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·재단 및 단체를 포함)은 균등분 납세의무자이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담배소매인인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5,500만원이고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지 않으면 균등분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.

정답 : ①

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비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.

문 8. 「지방세법」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.
-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- ③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인 경우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그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한다.
- ④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.

정답 : ③

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

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.

문 9. 「지방세기본법」상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비상장 상태인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.
- ②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% 미만인 경우 그들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정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.
- ③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정주주 여부의 판단은 해당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.
- ④ 제2차납세의무의 적용대상에서 상장법인은 제외되므로 코스닥상장법인의 출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.

정답 : ④

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출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경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지문은 틀린 규정이다.

문 10. 「지방세법」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?

- ①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
- ② 레저세의 납세의무자
- ③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
- ④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

정답 : ④

주민세 중 균등분의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없다.

문 11. 「지방세법」상 세목과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소비세는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.
- ②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택송품·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될 때에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- ③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급여를 받는 종업원으로 한다.
- ④ 레저세의 과세대상 사업을 하는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정답 : ③

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.

문 12. 「지방세법」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(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액)으로 한다.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「지방세법」상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
- ②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- ③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.
- ④ 개인사업자가 작성한 장부(원장)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그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도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.

정답 : ④

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
2.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
3. 판결문·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
4.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
5.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

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작성한 장부는 법인장부가 아니기 때문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
문 13. 「지방세법」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체계를 따르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세율을 동 표준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.
- ② 담배소비세는 종량세이며 세율은 정액세율의 체계를 따른다.
- ③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.
- ④ 수입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를 징수하기 위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.

정답 : ①

담배소비세의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.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감할 수 있다는 표현은 틀린 것이다.

문 14. 「지방세법」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소득세는 부가세(附加稅)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.
- ② 「소득세법」, 「법인세법」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- ③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
- ④ 지방소득세(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)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정답 : ①

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에 의해 직접 계산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가세의 성격이라 할 수 없다.(단순히 소득세의 10%를 곱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부가세(附加稅)가 아님)

문 15. 「지방세법」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화물을 실지 아니한 입출항 컨테이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.
- ②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채수공(採水孔) 토지의 소유자와 채수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소유자로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.
- ④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정답 : ②

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·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(採水)하는 자로 한다.

문 16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상 과세면제 및 경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배기량이 2천시시로서 법정규모 이하인 승용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.
- ②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도 감면할 수 있다.
- ③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.
- ④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.

정답 : ①

배기량이 1천시시로서 법정규모 이하인 승용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
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.

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(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)

①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
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
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.

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

①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"란 각각 배기
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.6미터, 너비 1.6미터, 높이 2.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·
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. 다만,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
길이·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한다.

문 17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과 관련한 지방세의 감면에
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천재지변, 소실, 도괴,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
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건물의 연면적과 동일하게
건축 또는 개수하여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
- ② 천재지변, 소실, 도괴,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
그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선박과 동일한 톤수로 새로 건조하여도 새로
건조한 선박의 가액이 종전 선박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
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.
- ③ 천재지변, 소실, 도괴,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멸실
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
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.
- ④ 천재지변·화재·교통사고 등으로 소멸·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
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·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
동차세를 면제한다.

정답 : ②

새로 건조,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
는 경우에만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. ②같은 경우 종전 선박과
동일한 톤수로 새로 건조하였기 때문에 취득세는 면제된다.

문 18. 「지방세기본법」상 제척기간, 소멸시효 및 결손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(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님)에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
- ②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- ③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「지방세기본법」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을 따른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한 경우를 제외하고,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.

정답 : ①

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(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님)에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

문 19. 「지방세법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차고용 토지, 보세창고용 토지, 시험·연구·검사용 토지,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다.
-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·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설치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.

정답 : ②

차고용 토지, 보세창고용 토지, 시험·연구·검사용 토지,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

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.

문 20. 「지방세법」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하며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.
- ③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.
- ④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진다.

정답 : ②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. 따라서 가감한다는 표현은 틀린 것이다.

1	2	3	4	5	6	7	8	9	10
③	③	②	②	③	④	①	③	④	④

11	12	13	14	15	16	17	18	19	20
③	④	①	①	②	①	②	①	②	②